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 경매 관련자에 대한 법정형 상향〉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36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 경매 관련자에 대한 법정형 상향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9. 2.

다. 회 부 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가 2019년 6조 8,898억 원에서 코로나 직후인 2022년에는 8조 4,536억 원으로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불법 경마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팽창하는 불법 경마시장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불법 경매 관련자에 대한 법정형 상향(안 제50조제1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현행 「한국마사회법」 제48조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매의 유사행위를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음.

동법 제48조제1항1)에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가 아닌 자’가 ① 경매를 시행하는 행위, ②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③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④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1) 「한국마사회법」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매를 시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매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이하 생략)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① ~ ④의 행위를 위하여 ⑤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상기 ① ~ ⑤ 위반 및 ⑥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벌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제2호·제8호·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제50조제1항·제2항----- ----- ----- ----- ----- -----.
제50조(벌칙)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 6.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② ----- ----- -----. <삭제> <삭제> 3. ~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제2호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④ 제1항제1호·제2호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몰수·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제56조(몰수·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제56조(몰수·추징) 제50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6호,----- -----.

현행	개정안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0조제1항 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 -----.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0조제2항 제6호-----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경마 및 스포츠토도 등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후에 불법 도박 규모가 감소하거나 합법 매출액이 증가한 과거 사례가 있었으며, 형량 및 벌금 상향을 불법 경마 주관자에 대해서만 한정할 점 등을 감안 시 개정안에 동의함.

2) 법무부

경마 유사행위, 마사회 경주를 이용한 불법 도박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은 유사행위 등을 한 자, 도박을 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원칙에 위반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 한국마사회, 서울마주협회²⁾, 서울조교사협회³⁾

최근 불법 경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2) 서울마주협회

○설립목적: 경마의 원활한 시행, 회원의 권익보호 및 이해증진, 경마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설립일: 1993.3.19. / ○ 회원수: 468명

3) 서울조교사협회

○설립목적: 경주마 조교 및 기승기술의 향상, 마사 업무 수행 개선, 회원권익보호와 이해증진

○설립일: 1993.7.7. / ○ 회원수: 530명

다. 검토의견

1) 불법 경마시장 규모 및 처벌

2022년 12월 발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6조 8,898억 원이었던 불법 경마 규모가 2022년에는 8조 4,536억 원으로 22.7%(1조 5,638억 원) 증가한 반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매출액은 코로나-19 유행 전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불법경마 규모 증가 현황 】

구 분		2019	2022
불법경마	규 모	6조 8,898억 원	8조 4,536억 원
	조세포탈액	1조 1,024억 원	1조 3,525억 원
합법경마 매출액		7조 3,572억 원	6조 3,969억 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4. 10. 25.) 제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기준

** 조세포탈 규모는 불법경마 규모(추정)에 한국마사회 마권발매시 제세금 16%(레저세10% + 지방교육세 4% + 농어촌특별세 2%)을 감안하여 추정

또한, 최근에는 접근 편의성, 베팅의 신속성을 기반으로 ICT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경마가 만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 의뢰 및 실적 또한 아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 의뢰 및 실적 현황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9월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의뢰(건)	8,295	12,346	16,519	22,357	15,222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실적(건)	7,505	10,118	12,177	15,345	11,06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4. 10. 25.) 제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확대·다변화되고 있는 불법 경마시장의 규모 및 구조를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등 ‘경마 유사행위’에 대한 현행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경마를 이용한 불법도박을 근절하려는 취지임.

불법 경마는 경마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 포탈과 도박 중독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에는 지능화·은닉화·광범위화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경마가 횡행하는 등 불법 경마의 폐해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불법 경마 단속 사례 】

○ 제48조제1항제2호 위반 사례

<'24.8.3. 경기도 불법경마 단속 사례>

- 불법경마 사이트 운영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이용자들에게 배팅을 하게 하고 적중 시 당첨금을 지급
- 피단속인원 2명, 총 단속금액(배팅금액) 49,352,000원

○ 제48조제2항위반 사례

<'24.5.5. 충청남도 불법경마 단속 사례>

- 일본 등 해외 경마의 배당률 등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해외 경마를 대상으로 배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
- 피단속인원 1명, 총 단속금액(배팅금액) 7,742,000원

○ 제48조제3항제1호 위반 사례

<'24.5.11. 충청북도 불법경마 단속 사례>

-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등을 무단으로 전송하는 사이트 운영
- 피단속인원 3명, 총 단속금액(배팅금액) 54,461,000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4. 10. 25.) 제출

다만,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적정 법정형은 범죄의 행위태양과 죄질의 정도, 유사 처벌규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경마 유사행위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기에 앞서, “경마 유사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음.

「국민체육진흥법」의 경우 “유사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약칭⁴⁾하고 있는 반면, 「한국마사회법」의 경우 제48조 제목이 “유사행위의 금지 등”일 뿐, 별도의 약칭 또는 정의 규정이 부재함.

다만, 현행법⁵⁾상의 “경마”의 정의와 경마의 시행주체는 마사회에 한정되어 있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유사행위의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법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중 제1항제1호의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같은 항 제2호의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4)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한국마사회법」

제2조(정의) 1. “경마”란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경마의 개최) ① 경마는 마사회가 개최한다.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같은 조 제2항제1호⁶⁾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협회의 경마 유사행위’로 볼 수 있음.

또한, ① 같은 항 제2호의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도 경마의 구성요소인 “마권발매”와 관련한 불법 영리행위이고,

②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의 경우 전자마권 도입에 따라 스마트폰 등을 통해 경주의 배당률 및 경주화면 등을 전송하는 행위가 “전자마권 발매”와 직접 연계되는 행위임을 고려할 때,

①, ②의 행위 또한 넓은 의미에서 경마 유사행위의 개념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6) 불법 경마에 이용되는 대상이 “국내경주”인지 “외국경주”인지에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형태의 불법 경마인 것으로 보임.

3) 경마 유사행위 법정형 상향 총괄검토

① 유사 입법례와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대한 고려 필요

불법 경마 처벌과 관련한 유사입법례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경륜·경정법」의 경우 유사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 유사행위의 내용에 따라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관련 유사 입법례 법정형 현황 】

연번	구 분	현행법 조항	「한국마사회법」 (경마)		「국민체육진흥법」 유사 처벌규정 (스포츠도트)	「경륜·경정법」 유사 처벌규정 (경륜·경정)
			현행	개정안		
1	마사회의 경주와 불법 유사행위를 한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제1호	7년↓ 7천만원↓	10년↓ 1억원↓	7년↓ 7천만원↓	7년↓ 7천만원↓
2	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방조한 자	제50조제1항제2호	7년↓ 7천만원↓	10년↓ 1억원↓	5년↓ 5천만원↓	7년↓ 7천만원↓
3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대행 또는 알선, 마권 양도	제48조제2항제2호	7년↓ 7천만원↓	10년↓ 1억원↓	3년↓ 3천만원↓	7년↓ 7천만원↓
4	경마 유사행위를 위해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	제48조제3항제1호	7년↓ 7천만원↓	10년↓ 1억원↓	3년↓ 3천만원↓	7년↓ 7천만원↓

※ 자료: 관계법령 재구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⁷⁾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토토 및 불법 경륜·경정 또한 불법 경마와 마찬가지로 다음 표와 같이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추정 규모가 21조 1,145억 원에 달해 불법 경마의 약 2.5배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스포츠토토 및 경륜·경정 규모 증가 현황 】

(단위 : 억 원)

구 분	2019	2022
불법 스포츠토토	20조 5,106억 원	21조 1,145억 원
불법 경마	6조 8,898억 원	8조 4,536억 원
불법 경륜	2조 3,761억 원	2조 2,054억 원
불법 경정	1조 849억 원	1조 587억 원

※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발췌

불법 스포츠토토 및 불법 경륜·경정의 경우에도 불법 경마와 같이 접근 편의성, 배팅의 신속성을 기반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도박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임.

불법 스포츠토토 및 불법 경륜·경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7) 2022년 12월 발표

스포츠토토 및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경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조세 포탈과 도박 중독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불법 경마와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중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그 규모가 불법 경마의 2.5배에 달하고 있어 불법 규모 측면에서는 보다 심각한 상황임.

이와 같이 불법 경마와 불법 스포츠토토 및 불법 경륜·경정이 범죄의 행위태양과 처벌을 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유사 입법례인 「국민체육진흥법」 및 「경륜·경정법」의 경우 가장 중한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마 유사행위의 적정 법정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⁸⁾을 살펴보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이란, 죄질과 보호법익 등이 유사한 범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하고, 반대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8) 2019.02.28. 2016헌가13·위헌

【 헌법재판소 결정(2019.02.28. 2016헌가13·위헌) 】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이란, 죄질과 보호법익 등이 유사한 범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하고, 반대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불법 경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경마 유사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성도 있지만, 개정안이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⁹⁾.

9) 법무부도 경마 유사행위, 마사회 경주를 이용한 불법 도박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개정안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원칙에 위반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4) 광의의 경마 유사행위 법정형 상향

개정안은 ① 현행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와,

② 제48조제3항제1호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도 광의의 경마 유사행위로 보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의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경륜·경정법」의 경우 현행 「한국마사회법」과 동일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규정¹⁰⁾하고 있음.

10) 「경륜·경정법」

제24조(유사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또는 모터보트 경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승자투표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경주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행위 등을 한 자

한편, 「국민체육진흥법」¹¹⁾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구매 알선 및 경기 관련 정보 제공행위는 적극적 형태의 범죄행위인 협의의 유사행위(불법 스포츠토트 운영 등)와 비교 시 범죄행위의 태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법정형 현황 】

연번	구분	현행법 조항	「한국마사회법」 (경마)		「국민체육진흥법」 유사 처벌규정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법」 유사 처벌규정 (경륜 경정)
			현행	개정안		
1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대행 또는 알선, 마권 양도	제48조제2항제2호	7년↓ 7천만원↓	10년↓ 1억원↓	3년↓ 3천만원↓	7년↓ 7천만원↓
2	경마 유사행위를 위해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	제48조제3항제1호	7년↓ 7천만원↓	10년↓ 1억원↓	3년↓ 3천만원↓	7년↓ 7천만원↓

자료: 관계법령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결정¹²⁾도 “보호법익이

11)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 헌법재판소 결정 2019.02.28. 2016헌가13·위헌 】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이란, 죄질과 보호법익 등이 유사한 범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하고, 반대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동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관시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 심사 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의의 유사행위인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를 불법 경매 운영 등 협의의 유사행위와 동일한 죄질로 보아 일괄적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일하게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5) 마사회 경주를 이용한 도박 또는 방조범 범정형 상향

개정안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한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있음.

개정안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는 그 시행방식이나 도박이익금의 배분 형태¹³⁾, 취급액의 규모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불법 경마와 유사한 불법 도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마 유사행위와 동일한 범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도박’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6조를 보면, 제1항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3) (한국마사회) “경마 유사행위”는 물주[또는 錢主(전주)]가 마사회와 같이 금품을 모집하여 적중자에게 지급하고 비적중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이고, “마사회 시행경주를 이용한 도박”은 물주 없이 2인 이상의 불법 도박자가 상호 간 내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임.

【 개정안 관련 형법 법정형 현황 】

구 분	현행법 조 항	「한국마사회법」 (경마)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유사 처벌규정 (스포츠도트)	「경륜·경정법」 유사 처벌규정 (경륜·경정)
		현행	개정안	도박	상습도박		
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방조한 자	제50조 제1항 제2호	7년↓ 7천만원↓	10년↓ 1억원↓	1천만원↓ (일시오락은 처벌 제외)	3년↓ 2천만원↓	5년↓ 5천만원↓	7년↓ 7천만원↓

자료: 관계법령 재구성

그런데,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상기 「형법」이 아닌 「한국마사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개정안은 「형법」과 같이 도박의 상습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 한번이라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 시 일률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일시오락’ 정도의 행위 및 ‘상습적 도박행위’ 등을 구분하여 차등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 입법례의 법정형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륜·경정법」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6
